

나. 총전에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법 제12조).

다. 이사장은 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법제처 세종〉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노무현(인)

2004년 1월 2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재

◎法律 第7095號

不正競争防止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不正競争防止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

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제4조제2항중 “제거 기타”를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不正競爭行爲”를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한다.

제8조중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

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第2條第1號”를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법은 처벌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①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중 “기타의 從業員”을 “그 밖의 종업원”으로, “第18條第3項”을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同條同項”을 “같은 조 각 해당 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91

◇주요내용

가.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 신설).

나.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

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5항 삭제,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國旗)·국장(國章) 등의 사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반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반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외에 범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노무현 인

2004년 1월 20일

국무총리 고 건